



내각부 남여공동참획국

1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1년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에는 첫 번째 개정이, 2007년에 두 번째 개정이 진행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 배우자 남성, 여성을 불문합니다. 사실혼이나 이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혼 전에 폭력을 당하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폭력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성적 폭력 (보호명령에는 신체적 폭력 또는 생명 등에 대한 협박 만이 그 대상) 도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는, 직무관계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데서 피해자의 심신의 상황이나 놓여진 환경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의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 카운슬링, 피해자 및 그 동반 가족의 일시보호, 각종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상담 및 상담기관의 소개
- 2 카운슬링
- 3 피해자 및 동반자의 긴급시의 안전 확보 및 일시적 보호
- 4 피해자의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기타 지원
- 5 보호명령제도의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지원
- 6 피해자를 거주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지원

※ 1-6 항목 중,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각 지원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일시보호

각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의 부인상담소에서는 각종 상담업무를 실시함과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일시적인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분과 함께 당분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는 민간기관의 긴급 피난처(쉼터-쉘터)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긴급 피난처(쉼터-쉘터)란...

민간단체가 그 시설을 운영하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긴급히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장소나 식사 등을 제공해 주고 여러 상담에 응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

채류자격이나 수입 등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제도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서로 거출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받을 때, 병원 창구에서 의료비의 일부 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제도는, 민간회사 근로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 근로자 이외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직장이나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적이나 재류자격을 불문하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되지만, 불법취노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재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그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상처 받거나 병 들었을 때도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통지를 우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진찰 받은 의료기관이 가해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보험자에게 의료비 통지를 우송할 때의 송부처를 변경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아동수당에 대한 제도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부친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자녀 등을 키우는 모친 등에게 지급되는 아동부양수당 등이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아동 연령이 각각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일정한 조건에 부응할 때는 배우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신청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호제도

모든 자산이나 능력 등을 다 활용했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공핍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진행하는 제도로, 생활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이 있습니다.

법률 상에서는 일본국민 만을 그 대상으로 하나, 합법적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그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 정주자 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일본에서는 아무리 배우자 사이라 해도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짓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호명령

배우자로부터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생명 등에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신체에 대한 폭력이 더 한 층 가해짐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협의 우려가 클 때는, 지방재판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재판소가 가해자에게 보호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6개월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거나 주거(가해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로 하는 주거는 제외합니다.)나 직장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 2 전화 등 금지명령 1의 명령의 기간 만료까지의 사이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아래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 (1) 면회의 요구
 - (2) 행동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 등
 - (3)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
 - (4) 무언전화, 연속해서 진행하는 전화·팩스·전자 메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함.)
 - (5)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의 전화·팩스·전자 메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함.)
 - (6) 오물·동물 시체 등의 현저하게 불쾌하고 혐오한 물건의 송부 등
 - (7) 명예를 해치는 사항을 알리는 것 등
 - (8)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을 알리는 것 등, 또는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문서나 도화의 송부 등
- 3 피해자의 자녀 또는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1의 명령의 기간 만료까지의 사이에, 피해자가 자녀 또는 친족 등에 대하여 가해자와 부득이하게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친족 등(피해자의 친족 기타 피해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의 신변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자녀 또는 친족 등의 주거지, 근무처 등의 부근을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 4 퇴거명령 2 개월 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생활의 본거를 함께 하는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나 주거 부근을 배회함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명령

가해자가 이 보호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명령 신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폭력지원센터 등으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받은 상황
- 거듭되는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인정됨이 충분한 사정
- 피해자와 동거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이 충분한 사정(동거하는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피해자의 친족 기타 피해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이 충분한 사정(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경찰 직원에게 의논한 사실이나 그 내용 등
또, 재판소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도 일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번역, 통역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용을 대신해서 지불받고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법률부조의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재류기간의 갱신·재류자격의 변경

배우자의 협력이 없어도, 재류기간의 갱신허가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이하, 재류기간갱신허가 등)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재류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재류기간갱신허가 등의 신청을 못하게 됨으로 재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부양 등을 위해,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8 정규의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재류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정규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일본에 체재하는 분은, 지방입국관리국 등을 찾아가 재류자격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불법체재 상태가 계속되므로 일본에서의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정확하게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분은 보호대상으로써, 대사관, 경찰, 지방입국관리국 등, 부인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9 외국인등록원표의 취급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원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 복사나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를 받을 때도 해당 외국인의 대리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 등 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혼인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별거할 때는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원표의 복사 또는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취급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체 시구정촌의 외국인등록 담당과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